

	회 장
상근부회장	고치환
김수영	



2014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4. 1. 2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4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4. 1. 22(수) 11:00 ~ 12:40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15명 중 14명 참석

가. 참석(12명) : 고치환, 송옥희, 부형중, 김금자, 김성숙, 김순효, 박영식, 박정해, 양광호,
양은심, 이흥기, 김문국,

나. 위임(2명) : 김재익, 김옥희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부장의 성원보고 후 고치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제6대 임원진이 구성되어 첫 이사회라고 하고 제주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향후 3년간의 임기를 함께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전차회의록 낭독을 지시하다.

- 박정해 이사 : 김성건 부장의 전차회의록 낭독에 앞서 회의자료에 첨부된 사안임으
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감사보고

- 의 장 : 허철훈 감사에게 2013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허철훈 감사 : 2013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하다.

- 의 장 : 허철훈 감사의 감사보고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박정해 이사 : 감사님들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며, 이사님들 또한 사전 배포된 자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통과에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13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원안 처리됨을 선언하다.

8. 업무보고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에게 업무보고를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인사위원회 선임,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보고 순서로 업무보고하다.

- 의 장 :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 김순호 이사 : 인사위원선임과 관련하여 본인은 지난 제5대 임원 임기 중에도 인사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가능하다면 이번 제6대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 분들에게 인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지 묻다.

- 김성건 부장 : 현재 인사규정상에 인사위원은 부회장과 이사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6대 임원이 아닌 경우 인사위원으로 선임이 불가하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운영지침 중 제4조 제3항의 내용 ‘당연직 위원은 이 회 상근부회장(사무처장)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상근부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므로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사무처 직원은 간사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제4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하다.

- 의 장 : 양광호 이사의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중 제4조 제3항 상근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김문국 이사 : 고치환 회장님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중 제4조 제3항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보고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은 제4조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다.



9.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제2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제3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3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제4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정안, 제6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선임안, 제7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자격 상실안이라고 하고, 이밖에 협의회와 복지관,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 추가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들 원안상정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7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포하다.

나. 부의안 상정

- 의 장 :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채택된 심의안건 중 예산·결산과 관련한 심의 안건인 제1호~제4호 의안까지는 일괄 상정하고 조직운영규정개정 등과 관련된 제5호, 제6호, 제7호 의안은 각각 구분하여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제안한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 제4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다.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과 복지관 권미애 부장, 어린이집 이승희 원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제4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권미애 부장 : 제2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이승희 원장 : 제3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김문국 이사 : 감사님들이 감사를 거친 사항이고, 고치환 회장님의 임기 중 운영의

지가 충분히 반영된 사항들이므로 원안통과를 요청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 제4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5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다.

마.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양은심 이사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서 제3조 제3항의 내용에서 ‘복지관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복지관 인사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후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관장 임용에 관한 사항까지 법인이 아닌 복지관 인사규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중 ‘복지관 직원의 임용’이라는 조문을 ‘복지관장을 제외한 직원에 관한 임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5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개정안 중 전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하고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은 제 3조 제3항의 조문 중 ‘복지관 ~~직원의 임용~~’이라는 조문을 ‘복지관장을 제외한 직원에 관한 임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선언하다.

바.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6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선임안을 상정하다.

사.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양광호 이사 : 원안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6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선임안은 이동한 직전회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한다고 선언하다.

아.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7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자격 상실안을 상정하다.

자.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우리 협의회 개인회원인 한형범 회원이 우리 협의회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이 급조 · 위조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의 ‘회원동정’ 이라는 문서를 지난 해 12월 31일 개별 사회복지사 및 도내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에 발송하였다.
이에 이 사항이 우리 협의회 회원규정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조항 중 제1항 제3호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고자 한다고 제안설명을 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부형종 부회장 :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음에도 마치 선거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자신이 낙선한 것처럼 사회복지계의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상황을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사회복지시설에 배포된 내용의 문건이 제주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로 배포되었는데 이 사항이 사회복지사협회 공식적인 회의절차를 거친

후 이뤄진 문건인지 확인되었는지 묻다.

- 김성건 부장 : 현재까지는 사회복지사협회 공식적인 회의절차를 거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다.



- 김문국 이사 : 사회복지사협회장이라는 자리도 선출직인데 이런 경우 역시 선출직인 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 기존 선출직 자리는 사퇴를 하고 선거에 출마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다. 협의회장 낙선 후에 다시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계의 선출직 대표로 있는 분들의 경우는 협의회장 선거 출마시 현직 선출직 대표자격을 사직한 후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본 사안은 충분히 회원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되어 회원자격 상실 요건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하다.

- 의 장 : ‘회원자격 상실’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는 양광호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한형범 회원의 이번 행위에 대해 우리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회원자격 상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인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이사들이 동의해 준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7호 의안인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자격 상실안은 다음 이사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고 선언하다.

- 의 장 :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인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과 제2호 의안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2013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제3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3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제4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제5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개정안 중 전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은 원안가결하고,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3조 제3항의 조문 중 ‘복지관 직원의 임용’을 ‘복지관장을 제외한 직원에 관한 임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제6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선임안은 이동한 직전회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7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자격 상실안은 다음 임시

이사회에서 한형범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소명결과를
갖고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10. 기타사항 토의

- 의 장 : 기타사항으로 김수완 상근부회장으로부터 2013년도 이사회 상조회 결산보고를 요청하다.
- 김수완 상근부회장 : 별지자료를 중심으로 2013년도 이사회 상조회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다.
- 김수완 상근부회장 : 별도의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고를 마친다.
- 의 장 : 더 이상의 기타안건에 대한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논의 종결함을 선언하다.

11. 폐 회

- 의 장 :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양은심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14년도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2:40)

2014년 1월 22일



회 장 : 고 치 환



부회장 : 송 옥 희 부 형 중 김 금 자



이 사 : 김 성 숙 김 순 호 박 영 석 박 정 해



양 광 호 양 은 심 이 흥 김 문 국



확인자 : 김 수 완



기 록 : 김 성 건

